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 21337호, 2026.2.10. 제정, 2026.8.11. 시행)됨에 따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반도체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3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산업성장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산업성장실에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하고, 그 밑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 중 5명(고위공무원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산업통상부의 정원으로 배정하고, 인도와의 경제·통상 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상협력국에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내 석탄산업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폐광 지원 및 폐광지역 경제진흥 등의 후속 조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자원안보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석탄산업팀을 신설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제정, 2026.7.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산업통상부 소속 남부안전관리소

의 관할구역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정비하며,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10. 1. ~ 10.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제85호”를 “제8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첨단민군협력과 · 중견기업정책과”를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중견기업정책과”로 하며, 같은 조 제17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5항 중 “제48호”를 “제34호까지, 제34호의2 및 제35호부터 제5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인공지능바이오융합산업과 · 반도체과 · 배터리전기전자과 · 섬유탄소나노과”를 “인공지능바이오융합산업과 · 배터리전기전자과 · 첨단민군협력과 · 섬유탄소나노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⑬ 배터리전기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배터리 산업, 전자산업(디스플레이가전팀장의 주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발광다이오드(LED) · 조명(유기발광다이오드 조명을 포함한다) 산업, 광 산업 및 중전기(重電器機) · 전선 · 전력응용기기 산업 등 전기산업의 기본정책의 수립 · 시행
2. 배터리 · 전자 · 전기산업의 기술개발 및 수출산업화 지원
3. 배터리 · 전자 · 전기기술에 기반한 컨버전스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4. 배터리·전자·전기산업 관련 산업동향·통계 및 수출입 현황 분석
5. 배터리·전자·전기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배터리·전자·전기산업의 지능화 및 자동화 등 고도화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7. 배터리·전자·전기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8. 해외투자·외국인투자유치 등 배터리·전자·전기산업의 국제화 추진
9. 배터리·전자·전기산업 표준화 활동의 지원
10. 배터리·전자·전기산업 기술의 특허활동 지원
11. 신뢰성평가·시스템인증 등 배터리·전자·전기산업의 시험·인증체제 구축 지원
12. 배터리·전자·전기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육성 지원
13. 배터리·전자·전기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조정
14.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 정책의 수립·시행
15.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16.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및 그 소속 위원회의 운영·지원
17.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18.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9.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육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0.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현황·통계의 조사·분석 및 국내외 정책 동향·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1. 소관 연구기관·단체·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22. 그 밖에 배터리·전자·전기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에 관한 사항 및 첨단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⑭ 첨단민군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제조업과 방위산업과의 연계 협력을 위한 진흥정책 마련

2.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민군협력 및 방위산업 분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수립·시행

3. 방위산업체의 지정 등 방위산업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4.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5.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군 기술협력의 활성화 지원

7. 절충교역 중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을 위한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제도운영 및 활성화,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확대, 국내 투자유치 등 무역진흥에 관한 사항

8. 방산물자의 지정과 방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의 품질경영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 지원

9.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중 방산물자등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의 국제협력 및 수출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협의 및 지원,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운영
10.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지원
11. 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재·부품·장비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 및 추진
12.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 「항공안전법」 제80조에 따른 공역위원회,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와의 협의 및 업무 지원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11조제6항 중 “자원안보정책과·석유산업과·가스산업과·석탄산업과·산업공급망정책과·소재부품장비개발과·철강세라믹과·화학산업과·무역안보정책과·무역안보심사과·기술안보과 및 광물자원팀·자원안전팀”을 “자원안보정책과·석유산업과·가스산업과·산업공급망정책과·소재부품장비개발과·철강세라믹과·화학산업과·무역안보정책과·무역안보심사과·기술안보과 및 석탄산업팀·광물자원팀·자원안전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하며, 제18항 및 제19항을 각각 제19항 및 제2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⑱ 석탄산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탄산업장기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석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
3.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격제도 운영
4. 석탄의 생산 및 석탄광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육성·개발
5. 석탄·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유통·비축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연탄공장의 이전(移轉)·단지화 및 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7. 대한석탄공사와의 업무 협조
8. 광산지역 진흥 및 대체산업 육성
9.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0. 석탄산업, 폐광지역 개발 및 광산피해 방지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1. 광해방지기본계획 등 광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2. 광산지역의 광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13. 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석탄 및 광해 관련 기술개발,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5. 한국광해광업공단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제19항제13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6. 그 밖에 국내 광물자원 개발기관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3조제5항제1호 중 “동남아·서남아”를 “동남아”로 한다.

제38조제2호 중 “동북아통상과”를 “동북아통상과, 인도통상협력과”로 한다.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인도통상협력과) ① 인도통상협력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인도통상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제40조의3(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①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에 반도체정책과·첨단반도체과 및 반도체생태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반도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 및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시행
2. 반도체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 및 추진상황의 점검
3. 반도체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
4. 반도체 관련 규제 개선 및 기업 애로사항의 발굴·해소
5. 반도체 관련 위원회 및 민관 협의체의 구성·운영

6. 반도체 관련 통상 현안 대응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7. 반도체 관련 국가 간 협력, 국제기구 대응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반도체의 수출 확대, 해외 진출 및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9. 반도체 관련 인력수급 정책의 수립·시행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0. 반도체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11. 반도체지원을 위한 세제·금융·재정지원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반도체 관련 특별회계·기금·정책금융 및 예산사업의 기획·조정
정에 관한 사항
13. 반도체에 대한 생산·수출입·내수·설비투자·연구개발투자 등
산업동향 및 통계의 조사·분석
14. 반도체 관련 위기 대응, 공급망 현안 및 주요 대외 현안의 총괄·
조정
15. 반도체산업의 탄소중립, 환경규제 대응 및 친환경 생산기반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16. 소관 연구기관·단체·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7. 그 밖에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첨단반도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스템반도체 · 전력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 · 시행
2. 시스템반도체 · 전력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분야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 · 시행
3. 시스템반도체 · 전력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관련 기술개발 · 사업화 및 실증 지원
4. 시스템반도체 · 전력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사업과 기반시설의 기획 · 구축 및 운영 지원
5. 시스템반도체 · 전력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분야 규제특례 및 실증사업의 발굴 · 추진
6. 시스템반도체 · 전력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분야 정책금융 · 펀드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시스템반도체 · 전력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관련 기업 ·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 운영
8. 시스템반도체 · 전력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분야 국내외 시장동향 · 기술동향 및 통계의 조사 · 분석
9. 시스템반도체 · 전력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관련 시험 · 인증 · 표준화 및 특허활동 지원
10. 팹리스기업의 창업 · 성장 · 사업화 · 수출 및 수요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11. 파운드리산업의 발전 및 팹리스기업·파운드리기업·패키징기업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2. 첨단패키징산업의 육성 및 관련 기술개발·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13. 전자부품(전자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산업·인쇄전자산업의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14.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5. 소관 산업 관련 연구기관·단체·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6. 그 밖에 첨단반도체, 팹리스, 첨단패키징, 파운드리 등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⑤ 반도체생태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도체산업 생태계 및 지역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2.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육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변경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4.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수립·승인 및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5.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위원회 및 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6. 반도체클러스터의 전력·용수·도로·폐수처리시설 등 산업기반시설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와의 협의·조정

8. 반도체클러스터 입주기업·연구기관 및 지원기관의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9. 반도체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설비·연구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
 10. 반도체클러스터 입주기업·기관의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지원에 관한 사항
 11. 지역별 반도체산업 육성계획 및 지역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12.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공급망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3.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내재화 및 양산 지원에 관한 사항
 14.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수출통제 대응 및 글로벌 공급망 분석에 관한 사항
 15.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중견·중소기업의 성장·투자·사업화 및 수요기업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16.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산업 및 지역 반도체산업의 시장동향·산업동향 및 통계 조사·분석
 17. 소관 연구기관·단체·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⑥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7 및 별표 7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산업통상부령 제1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6항 중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을 “통상협정협상총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석탄산업과장”을 “자원안보정책과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석탄산업팀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석탄산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석탄산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자원안보정책과장이 분장한다.

[별표 2]

광산안전사무소의 관할구역(제33조 관련)

명칭	관할구역
동부광산안전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울진군 및 봉화군
중부광산안전사무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울진군 및 봉화군은 제외한다) 및 충청북도
서부광산안전사무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및 충청남도
남부광산안전사무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상남도, 전북특별자치도 및 제주도

[별표 3]

산업통상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820
정무직 계	3
장관	1
본부장	1
차관	1
별정직 계	7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장관정책보좌관)	2
비서(6급 상당)	1
비서(8급 상당)	1
비서(9급 상당)	2
일반직 계	810
고위공무원단	2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비상안전기획관)	1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8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4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4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9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4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 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	

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관 · 편사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62
행정사무관	64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관 · 편사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226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6
전산사무관	1
해양수산사무관	1
행정주사	24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기상주사 · 사회복지주사 · 감사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식품위생주사 · 약무주사 · 간호주사 · 항공주사 · 방재안전주사 · 세무주사 · 공업연구사 · 학예연구사 · 편사연구사 · 농업연구사 · 임업연구사 · 해양수산연구사 · 기상연구사 · 보건연구사 · 환경연구사 · 시설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53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1
운전주사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 기상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농업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항공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감사주사보 · 간호주사보 또는 세무주사보	60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 상당(비서)	1
운전주사보	1
행정서기 · 방재안전서기 · 간호서기 또는 세무서기	20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통계서기 · 환경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 방송통신서기 · 사서서기 · 보건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4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통계서기 · 환경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 방송통신서기 · 사서서기 · 보건서기 · 방재안전서기 또는 별정직 8급 상당(비서)	1
운전서기	2
전산서기	1
행정서기보 · 방재안전서기보 · 간호서기보 또는 세무서기보	7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통계서기보 · 환경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 방송통신서기보 · 사서서기보 · 보건서기보 · 방재안전서기보	4
운전서기보	7
사무운영주사	1

사무운영서기보	4
수석전문관 · 행정전문관 · 통계전문관 · 공업전문관 · 시설전문관 · 전산전문관 또는 방송통신전문관	18
연구사	1
전문경력관 가군(비상안전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사진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홍보 담당)	1

[별표 4]

산업통상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820
정무직 계	3
장관	1
본부장	1
차관	1
별정직 계	7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장관정책보좌관)	2
비서(6급 상당)	1
비서(8급 상당)	1
비서(9급 상당)	2
일반직 계	810
고위공무원단	2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비상안전기획관)	1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8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4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4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9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4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 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	

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관 · 편사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65
행정사무관	63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관 · 편사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243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6
전산사무관	1
해양수산사무관	1
행정주사	24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기상주사 · 사회복지주사 · 감사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식품위생주사 · 약무주사 · 간호주사 · 항공주사 · 방재안전주사 · 세무주사 · 공업연구사 · 학예연구사 · 편사연구사 · 농업연구사 · 임업연구사 · 해양수산연구사 · 기상연구사 · 보건연구사 · 환경연구사 · 시설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44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1
운전주사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 기상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농업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항공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감사주사보 · 간호주사보 또는 세무주사보	53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 상당(비서)	1
운전주사보	1
행정서기 · 방재안전서기 · 간호서기 또는 세무서기	18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통계서기 · 환경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 방송통신서기 · 사서서기 · 보건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4
행정서기 · 공업서기 · 통계서기 · 환경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 방송통신서기 · 사서서기 · 보건서기 · 방재안전서기 또는 별정직 8급 상당(비서)	1
운전서기	2
전산서기	1
행정서기보 · 방재안전서기보 · 간호서기보 또는 세무서기보	6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통계서기보 · 환경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 방송통신서기보 · 사서서기보 · 보건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4
운전서기보	7
사무운영주사	1

사무운영서기보	4
수석전문관 · 행정전문관 · 통계전문관 · 공업전문관 · 시설전문관 · 전산전문관 또는 방송통신전문관	18
연구사	1
전문경력관 가군(비상안전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사진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홍보 담당)	1

[별표 5]

산업통상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본문 관련)

1. 국가기술표준원 공무원 정원표

총계	220
일반직 계	220
고위공무원단 · 공업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5
부이사관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3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공업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7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공업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40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방재안전주사 · 공업연구사 · 환경연구사 · 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47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3
행정서기 · 사서서기 · 공업서기 · 환경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4
행정서기보 · 사서서기보 · 공업서기보 · 환경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7
운전서기보	3
방호서기보	1
기계운영서기보 · 전기운영서기보 또는 사무운영서기보	2

공업연구원 · 환경연구원 · 시설연구원 또는 보건연구원	45
공업연구사 · 환경연구사 · 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32
2.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공무원 정원표	
총계	16
일반직 계	16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7
행정주사	3
행정서기	1
3. 광업등록사무소 공무원 정원표	
총계	25
일반직 계	25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7
공업주사	4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8
공업주사보	1
행정서기 · 공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1
운전서기보	1
4.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무원 정원표	
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총계	17
일반직 계	17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3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또는 간호주사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2
행정서기 · 시설서기 또는 간호서기	4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
운전서기보	1
방호서기보	1
나.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총계	14
일반직 계	14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또는 간호주사	2
방호주사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4
방호서기보	1
다.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총계	10
일반직 계	10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또는 간호주사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3
행정서기보	1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간호서기보	1
방호서기보 또는 사무운영서기보	1
라.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총계	8
일반직 계	8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간호주사	3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2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간호서기보	1
전기운영서기보·건축운영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1
마. 울춘자유무역지역관리원	
총계	7
일반직 계	7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간호주사	3
행정서기 또는 간호서기	1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간호서기보	1
전기운영서기보 또는 건축운영서기보	1
바.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총계	8
일반직 계	8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간호주사	2
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1
방호서기	1
사.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총계	9

일반직 계	9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또는 간호주사	3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2
사무운영서기보	1
5. 광산안전사무소 공무원 정원표	
총계	34
일반직 계	34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또는 전산주사	6
공업주사 · 방재안전주사 또는 간호주사	5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8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전산서기 · 방재안전서기 또는 간호서기	3
운전서기보	2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간호서기보	2
사무운영서기보	2

[별표 6]

산업통상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단서 관련)

1. 국가기술표준원 공무원 정원표

총계	220
일반직 계	220
고위공무원단 · 공업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5
부이사관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3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공업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8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공업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41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방재안전주사 · 공업연구사 · 환경연구사 · 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45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3
행정서기 · 사서서기 · 공업서기 · 환경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14
행정서기보 · 사서서기보 · 공업서기보 · 환경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7
운전서기보	3
방호서기보	1
기계운영서기보 · 전기운영서기보 또는 사무운영서기보	2

공업연구원 · 환경연구원 · 시설연구원 또는 보건연구원	48
공업연구사 · 환경연구사 · 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29
2.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공무원 정원표	
총계	16
일반직 계	16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7
행정주사	3
행정서기	1
3. 광업등록사무소 공무원 정원표	
총계	25
일반직 계	25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2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7
공업주사	4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8
공업주사보	1
행정서기 · 공업서기 또는 전산서기	1
운전서기보	1
4.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무원 정원표	
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총계	17
일반직 계	17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3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또는 간호주사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2
행정서기 · 시설서기 또는 간호서기	4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
운전서기보	1
방호서기보	1
나.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총계	14
일반직 계	14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또는 간호주사	2
방호주사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4
방호서기보	1
다.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총계	10
일반직 계	10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또는 간호주사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3
행정서기보	1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간호서기보	1
방호서기보 또는 사무운영서기보	1
라.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총계	8
일반직 계	8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간호주사	3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2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간호서기보	1
전기운영서기보·건축운영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1
마. 울춘자유무역지역관리원	
총계	7
일반직 계	7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간호주사	3
행정서기 또는 간호서기	1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간호서기보	1
전기운영서기보 또는 건축운영서기보	1
바.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총계	8
일반직 계	8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간호주사	2
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1
방호서기	1
사.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총계	9

일반직 계	9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또는 간호주사	3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2
사무운영서기보	1
5. 광산안전사무소 공무원 정원표	
총계	34
일반직 계	34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또는 전산주사	6
공업주사 · 방재안전주사 또는 간호주사	5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8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전산서기 · 방재안전서기 또는 간호서기	3
운전서기보	2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간호서기보	2
사무운영서기보	2

[별표 7]

산업통상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9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통상정책국 기후에너지통상과	0명	2027년 9월 30일 까지
2. 산업성장실 첨단민군협력과	7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2028년 9월 30일 까지
3. 산업성장실 산업인공지능정책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8년 9월 30일 까지
4. 산업성장실 산업인공지능정책과	10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	2028년 9월 30일 까지
5. 산업자원안보실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8년 9월 30일 까지
6. 산업성장실 첨단반도체과	6명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2029년 9월 30일 까지

[별표 7의2]

산업통상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40조제2항, 제40조의2제2항, 제40조의3제6항 관련)

1. 한미통상협력과(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7
일반직 계	7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1
행정사무관	3
행정주사	2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 기상주사보 · 사회복지 주사보 · 농업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항공주사보 · 방재안전 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1

2. 인도통상협력과(존속기한: 2028년 9월 30일)

총계	4
일반직 계	4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1
행정사무관	2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 기상주사보 · 사회복지 주사보 · 농업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항공주사보 · 방재안전 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1

3.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존속기한: 2029년 9월 30일)

총계	8
일반직 계	8
고위공무원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관 · 편사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항공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부감사관 · 공업연구관 · 학예연구관 · 편사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상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2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기상주사 · 사회복지주사 · 감사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보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식품위생주사 · 약무주사 · 간호주사 · 항공주사 · 방재안전주사 · 공업연구사 · 학예연구사 · 편사연구사 · 농업연구사 · 임업연구사 · 해양수산연구사 · 기상연구사 · 보건연구사 · 환경연구사 · 시설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2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 기상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농업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항공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산업정책실) ① ~ ④ (생략)	제9조(산업정책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조산업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61호부터 <u>제85호</u> 까지, 제99호 및 제100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 ----- ----- <u>제82호</u> ----- -----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산업정책실에 산업정책과 · 산업일자리혁신과 · 산업환경과 · 지역경제총괄과 · 지역경제진흥과 · 입지총괄과 · 자동차과 · 조선해양플랜트과 · <u>엔지니어링디자인과</u> · <u>첨단민군협력과</u> · <u>중견기업정책과</u> · <u>중견기업지원과</u> · 유통물류과 · 기업정책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기업정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 ----- ----- ----- ----- ----- <u>엔지니어링디자인과</u> · <u>중견기업정책과</u> ----- ----- ----- ----- ----- ----- ----- ----- -----.
⑧ ~ ⑫ (생략)	⑧ ~ ⑫ (현행과 같음)
⑬ <u>첨단민군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삭 제></u>

1.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제조업
과 방위산업과의 연계 협력을
위한 진흥정책 마련
2.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
법」에 따른 민군협력 및 방
위산업 분야 소재·부품·장
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
책수립·시행
3. 방위산업체의 지정 등 방위
산업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4.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
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5.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
선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
정한 것 외에 민·군 기술협
력의 활성화 지원
7. 절충교역 중 군수품 외의 물
자의 연계 수출을 위한 산업
협력분야 절충교역 제도운영
및 활성화,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확대, 국내
투자유치 등 무역진흥에 관한
사항
8. 방산물자의 지정과 방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의 품질경영

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 지원

9.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중
방산물자등의 연구개발 및 국
산화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의
국제협력 및 수출에 관한 사
항에 관한 협의 및 지원, 방위
산업발전협의회 운영

10.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지원

11. 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
공기 관련 소재·부품·장비
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지원
시책 수립 및 추진

12.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
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항
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
공정책위원회, 「항공안전
법」 제80조에 따른 공역위원
회, 「우주개발 진흥법」 제6
조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와
의 협의 및 업무 지원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
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 기
관과의 협조

⑮ ~ ⑳ (생략)
제10조(산업성장실) ① ~ ④ (생략)

⑤ 첨단산업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32호부터 제4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산업성장실에 산업기술정책과·산업기술시장과·산업규제혁신과·산업인공지능정책과·인공지능기계로봇과·인공지능바이오융합산업과·반도체과·배터리전기전자과·섬유탄소나노과 및 디스플레이가전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디스플레이가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 ⑫ (생략)

⑬ 반도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도체 소자(素子)·재료·제조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시스템 반도체산업의 육성

⑮ ~ ⑳ (현행과 같음)
제10조(산업성장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제34호까지, 제34호의2 및 제35호부터 제51호-----.

⑥ -----

-----인공지능바이오융합산업과·배터리전기전자과·첨단민군협력과·섬유탄소나노과 -----

-----.

⑦ ~ ⑫ (현행과 같음)

⑬ 배터리전기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배터리 산업, 전자산업(디스플레이가전팀장의 주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발광다이오드(LED

정책의 수립·시행

3. 인쇄전자산업의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4.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5. 반도체산업·전자부품(전자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산업·인쇄전자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규제 완화와 산업활성화 대책의 수립·추진

6. 반도체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의 시험·인증체제 구축 및 생산성 향상, 전문인력 양성, 대·중소기업 협력 등의 지원

7. 반도체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의 구축 및 관리·운영

8. 반도체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의 차세대 기술의 개발 지원 및 특허활동 지원

9. 반도체산업·전자부품산업·인쇄전자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및 해외투자 지원 등 국제협력 지원

10. 반도체산업·전자부품산업

D)·조명(유기발광다이오드 조명을 포함한다) 산업, 광 산업 및 중전기(重電器機)·전선·전력응용기기 산업 등 전기산업의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배터리·전자·전기산업의 기술개발 및 수출산업화 지원

3. 배터리·전자·전기기술에 기반한 컨버전스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4. 배터리·전자·전기산업 관련 산업동향·통계 및 수출입 현황 분석

5. 배터리·전자·전기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배터리·전자·전기산업의 지능화 및 자동화 등 고도화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7. 배터리·전자·전기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8. 해외투자·외국인투자유치 등 배터리·전자·전기산업의 국제화 추진

9. 배터리·전자·전기산업 표

· 인쇄전자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1. 반도체산업 · 전자부품산업 · 인쇄전자산업의 표준화 · 공용화 · 고부가가치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의 수립 · 시행

12. 내장형소프트웨어의 기술개발 및 보급 · 확산

13.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 · 지원

14. 내장형소프트웨어 수요업체와의 협력기반 조성

15. 내장형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및 품질인증 활동 지원

16.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 · 수출입 · 내수 · 설비투자 · 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7. 소관 연구기관 · 단체 · 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8. 그 밖에 반도체산업 · 전자부품산업 · 인쇄전자산업 ·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사항 및 첨단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준화 활동의 지원

10. 배터리 · 전자 · 전기산업 기술의 특허활동 지원

11. 신뢰성평가 · 시스템인증 등 배터리 · 전자 · 전기산업의 시험 · 인증체제 구축 지원

12. 배터리 · 전자 · 전기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육성 지원

13. 배터리 · 전자 · 전기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 · 조정

14.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 · 보호 정책의 수립 · 시행

15.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 ·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 시행

16.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및 그 소속 위원회의 운영 · 지원

17.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법령 · 제도의 연구 · 개선 및 운영

18.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9.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 육성 및 운영 · 지원에 관한 사항

20.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현황 · 통계의 조사 · 분석 및 국내외 정책동향 · 국제협력에 관한

⑭ 배터리전기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배터리 산업, 전자산업(디스플레이가전팀장의 주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발광다이오드(LED)·조명(유기발광다이오드 조명을 포함한다) 산업, 광 산업 및 중전기기(重電器機)·전선·전력응용기기 산업 등 전기산업의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배터리·전자·전기산업의 기술개발 및 수출산업화 지원

3. 배터리·전자·전기기술에 기반한 컨버전스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4. 배터리·전자·전기산업 관련 산업동향·통계 및 수출입 현황 분석

사항

21. 소관 연구기관·단체·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22. 그 밖에 배터리·전자·전기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에 관한 사항 및 첨단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⑭ 첨단민군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제조업과 방위산업과의 연계 협력을 위한 진흥정책 마련

2.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민군협력 및 방위산업 분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수립·시행

3. 방위산업체의 지정 등 방위산업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4.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5.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민·군 기술협

5. 배터리·전자·전기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배터리·전자·전기산업의 지능화 및 자동화 등 고도화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7. 배터리·전자·전기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8. 해외투자·외국인투자유치 등 배터리·전자·전기산업의 국제화 추진

9. 배터리·전자·전기산업 표준화 활동의 지원

10. 배터리·전자·전기산업 기술의 특허활동 지원

11. 신뢰성평가·시스템인증 등 배터리·전자·전기산업의 시험·인증체제 구축 지원

12. 배터리·전자·전기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육성 지원

13. 배터리·전자·전기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조정

14. 소관 연구기관·단체·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5. 그 밖에 배터리·전자·전

력의 활성화 지원

7. 절충교역 중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을 위한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제도운영 및 활성화,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확대, 국내 투자유치 등 무역진흥에 관한 사항

8. 방산물자의 지정과 방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의 품질경영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 지원

9.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중 방산물자등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의 국제협력 및 수출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협의 및 지원,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운영

10.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지원

11. 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재·부품·장비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지원 시책 수립 및 추진

12.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

기산업에 관한 사항

⑮ · ⑯ (생략)

제11조(산업자원안보실) ① ~ ⑤

(생략)

⑥ 산업자원안보실에 자원안보 정책과 · 석유산업과 · 가스산업과 · 석탄산업과 · 산업공급망정책과 · 소재부품장비개발과 · 철강세라믹과 · 화학산업과 · 무역안보정책과 · 무역안보심사과 · 기술안보과 및 광물자원팀 · 자원안전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 ⑨ (생략)

⑩ 석탄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 「항공안전법」 제80조에 따른 공역위원회,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와의 협의 및 업무 지원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 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⑮ · ⑯ (현행과 같음)

제11조(산업자원안보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자원안보 정책과 · 석유산업과 · 가스산업과 · 산업공급망정책과 · 소재부품장비개발과 · 철강세라믹과 · 화학산업과 · 무역안보정책과 · 무역안보심사과 · 기술안보과 및 석탄산업팀 · 광물자원팀 · 자원안전팀-----

-----.

⑦ ~ ⑨ (현행과 같음)

<삭제>

분장한다.

1. 석탄산업장기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석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
3.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격제도 운영
4. 석탄의 생산 및 석탄광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육성·개발
5. 석탄·석탄가공제품의 수급 안정·유통·비축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연탄공장의 이전(移轉)·단지화 및 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7. 대한석탄공사와의 업무 협조
8. 광산지역 진흥 및 대체산업 육성
9.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0. 석탄산업, 폐광지역 개발 및 광산피해 방지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1. 광해방지기본계획 등 광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2. 광산지역의 광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13. 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관

리 등에 관한 사항

14. 석탄 및 광해 관련 기술개발,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5. 한국광해광업공단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제18항제13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6. 그 밖에 국내 광물자원 개발기관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다른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 ⑰ (생략)
<신설>

⑪ ~ ⑰ (현행과 같음)

⑱ 석탄산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탄산업장기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석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

3.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격제도 운영

4. 석탄의 생산 및 석탄광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육성·개발

5. 석탄·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유통·비축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연탄공장의 이전(移轉)·단지화 및 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⑱ · ⑲ (생략)

제13조(통상협력국) ① ~ ④ (생

7. 대한석탄공사와의 업무 협조

8. 광산지역 진흥 및 대체산업
육성

9.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0. 석탄산업, 폐광지역 개발 및
광산피해 방지에 관한 법령 · 제
도의 연구 · 개선

11. 광해방지기본계획 등 광해
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시행

12. 광산지역의 광해 방지 및 복
구에 관한 사항

13. 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 · 관
리 등에 관한 사항

14. 석탄 및 광해 관련 기술개
발,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
에 관한 사항

15. 한국광해광업공단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제19항제13호
의 사항은 제외한다)

16. 그 밖에 국내 광물자원 개발
기관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⑲ · ⑳ (현행 제18항 및 제19항
과 같음)

제13조(통상협력국) ① ~ ④ (현

략)

⑤ 아주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남아·서남아 지역(이하 이 항에서 “아주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 17. (생략)

⑥ (생략)

제38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통상협력국: 통상협력총괄과, 동북아통상과, 아주통상과, 중동아프리카통상과

3. (생략)

<신설>

행과 같음)

⑤ -----
-----.

1. 동남아 -----

2. ~ 17.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38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

1. (현행과 같음)

2. -----
동북아통상과, 인도통상협력과-----

3.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인도통상협력과) ① 인도통상협력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신 설>

② 인도통상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제40조의3(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①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에 반도체정책과·첨단반도체과 및 반도체생태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반도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 및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시행
2. 반도체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 및 추진상황의 점검
3. 반도체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
4. 반도체 관련 규제 개선 및 기업 애로사항의 발굴·해소

5. 반도체 관련 위원회 및 민관
협의체의 구성·운영
6. 반도체 관련 통상 현안 대응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7. 반도체 관련 국가 간 협력,
국제기구 대응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반도체의 수출 확대, 해외 진
출 및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에 관한 사항
9. 반도체 관련 인력수급 정책
의 수립·시행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0. 반도체 관련 해외 우수인력
의 발굴·유치 및 활용 지원
에 관한 사항
11. 반도체지원을 위한 세제·
금융·재정지원 및 투자 활성화
에 관한 사항
12. 반도체 관련 특별회계·기
금·정책금융 및 예산사업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13. 반도체에 대한 생산·수출
입·내수·설비투자·연구개
발투자 등 산업동향 및 통계

의 조사·분석

14. 반도체 관련 위기 대응, 공급망 현안 및 주요 대외 현안의 총괄·조정

15. 반도체산업의 탄소중립, 환경규제 대응 및 친환경 생산 기반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16. 소관 연구기관·단체·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7. 그 밖에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첨단반도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스템반도체·전력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2. 시스템반도체·전력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분야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시행

3. 시스템반도체·전력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관련 기술개발·사업화 및 실증 지원

4. 시스템반도체·전력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사업과 기반시설의 기획·구축

및 운영 지원

5. 시스템반도체·전력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분야 규제특례
및 실증사업의 발굴·추진
6. 시스템반도체·전력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분야 정책금융·
펀드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시스템반도체·전력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관련 기업·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8. 시스템반도체·전력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분야 국내외 시
장동향·기술동향 및 통계의
조사·분석
9. 시스템반도체·전력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관련 시험·인증
·표준화 및 특허활동 지원
10. 팹리스기업의 창업·성장·
사업화·수출 및 수요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11. 파운드리산업의 발전 및 팹
리스기업·파운드리기업·패키
징기업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2. 첨단패키징산업의 육성 및
관련 기술개발·인프라 구축

에 관한 사항

13. 전자부품(전자회로기관,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산업·인쇄전자산업의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14.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5. 소관 산업 관련 연구기관·단체·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6. 그 밖에 첨단반도체, 패키징, 첨단패키징, 파운드리 등 관련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⑤ 반도체생태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도체산업 생태계 및 지역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2.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육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변경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4.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수립·승인 및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5.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위원회
및 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에 관한 사항

6. 반도체클러스터의 전력·용
수·도로·폐수처리시설 등
산업기반시설의 조성 및 지원
에 관한 사항

7.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관련
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와의 협의·조정

8. 반도체클러스터 입주기업·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의 유치
· 지원에 관한 사항

9. 반도체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설비·연구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

10. 반도체클러스터 입주기업·
기관의 애로사항 발굴 및 해
소 지원에 관한 사항

11. 지역별 반도체산업 육성계
획 및 지역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12.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산
업의 육성 및 공급망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u>13.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내재화 및 양산 지원에 관한 사항</u> <u>14.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수출통제 대응 및 글로벌 공급망 분석에 관한 사항</u> <u>15.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중견·중소기업의 성장·투자·사업화 및 수요기업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u> <u>16.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산업 및 지역 반도체산업의 시장동향·산업동향 및 통계 조사·분석</u> <u>17. 소관 연구기관·단체·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u> <u>⑥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u>
산업통상부령 제1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⑤ (생략) ⑥ 제5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산업통상부령 제1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디스플레이가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디스플레이가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배터리전기전자과장이 분장하고,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이 분장한다.

⑦ ~ ⑨ (생략)

⑩ 제9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광물자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광물자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석탄 산업과장이 분장한다.

⑪ ~ ⑭ (생략)

통상협정협상총괄과장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 -----

----- 자원안보
정책과장-----.

⑪ ~ ⑭ (현행과 같음)